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



CONTENTS

PART

01

UNI-PASS 활용 준비 5

PART

02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15

PART

03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45

PART

04

FTA 지원제도 활용하기 57



UNI-PASS

PART 01

UNI-PASS 활용 준비

01 UNI-PASS 활용 준비

1 UNI-PASS 개요

- 유니패스 : 개인과 기업이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필요한 세관신고, 세금납부, 요건 신청 등 모든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 유니패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전자신고 : 수출입신고, FTA, 환급신청 등 관세 행정 신고업무 및 결과 확인
- 전자납부 : 수입신고 후 관세 등 세금 납부 및 체납내역 조회
- 정보조회 :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관정보, 법규준수도 통계부호 조회
- 기타업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통관단일창구, AEO 업무 등

2 UNI-PASS 이용 신청

- 유니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함
 - ① 신청인은 공동인증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 ②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 유니패스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사용자등록 메뉴 이용(유형 : 업체 및 대표자)
 - ③ 세관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등을 확인 후 유니패스 이용 승인
 - ④ 법인 통관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법인통관고유 번호 별도 신청
 - * 유니패스 →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3 시스템 · 업무 문의

- 유니패스 시스템 문의(☎ 1544-1285) : 유니패스 전산 업무 관련 상담 및 문의
 - 문의 내이력 확인 : 유니패스 → 고객지원 → 커뮤니티 → 자주 묻는 질문
- 관세행정 업무 문의(☎ 125) : 관세업무, 품목분류, 관세 관련 법령 등 제도 문의

02

UNI-PASS 활용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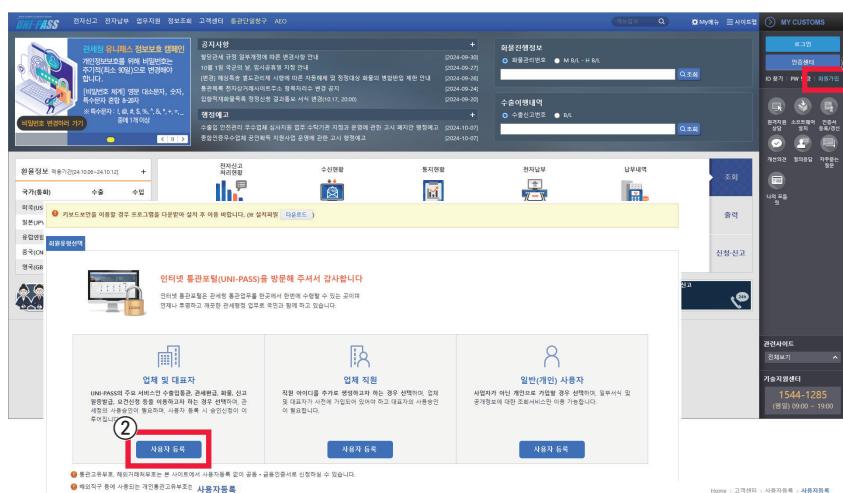
1 UNI-PASS 이용 신청하기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위해서는 UNI-PASS 회원 유형을 “업체 및 대표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UNI-PASS 이용 신청

업체 및 대표자

인터넷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 등 업무 처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회원 유형 중 “업체 및 대표자”를 선택합니다.



(1) 회원 유형 선택

[업체 및 대표자]의 사용자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2)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사용자등록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의 동의를 체크하고 사용자매뉴얼, 공동인증서 발급 및 등록 시 유의사항 매뉴얼을 다운로드하고, 본인인증 방식을 선택한다.

사용자등록

Home > 고객센터 > 사용자등록 > 사용자등록

● 키보드보안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후 이용 바랍니다. (※ 설치곡원 [다운로드])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회원유형선택 >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업체등록변호법인 > 업체정보 > 사용자정보 > 부호및서비스신청 > SMS신청

약관 동의

인터넷통관포털(UNI-PASS)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인터넷통관포털(UNI-PASS)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회원가입 가능)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가관세청정부시스템 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수집 이용 목적
관세청 통관포털 회원가입, 제공 서비스(수입 및 수출 신고 등) 업무이용

동의함 동의하지(일정)
 동의함 동의하지(일정)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통관화상(기타)방법의 경우에만 회원가입 가능)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인터넷 통관포털 사용자 안전도 조사**

동의함 동의하지(일정)

개인정보 제공자 제공 품목의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인터넷 통관포털(https://internet.customs.go.kr)에서 수집한 정보는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면밀도 조사 소스형업체

2.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터넷 통관포털 사용자 안전도 조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연내개인정보보호법 제4(2)

1. 수집 이용 근거
[관세청] 외 다른 기관과 근거하여 수집·이용하여, 공공기록물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

2. 수집 이용 목적
관세청 통관포털 제공 서비스(수입 및 수출 신고 등) 업무이용

③

동의함 동의하지(일정)

본인인증

④

실명인증 I-PIN인증

•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I-PIN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회원유형선택 >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업체정보 > 사용자정보 > 부호및서비스신청 > SMS신청

⑤ **업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다음

- 업체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한다.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리면 승인 시 반려되며 사업자번호가 틀린 경우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기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이미 등록된 번호입니다” 메시지가 발생되며,
-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이디찾기/비밀번호변경’을 이용하여 기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업체정보

회원유형선택 >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업체정보] > 사용자정보 > 부호및서비스신청 > SMS신청

⑥ *신청세관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상호
*업체주소
*업체전화번호

※ 해당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관에 제출, 주소 검색 후 선택 시 자동 선택됩니다.

법인등록번호
주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이기](#)를 클릭하십시오.

업체팩스번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본인은 이 전 업무처리에 관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통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업체정보는 세관 승인 완료 후 정보 변경 시 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항목입니다.

이전 다음

작성항목

사업자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단계의 사업자등록번호 세팅
업체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단계의 업체상호 세팅
법인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입력
업체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 정보를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우편번호를 검색하여 기본주소는 자동입력하고, 상세주소는 직접 입력
업체전화번호	
업체팩스번호	

(5) 사용자정보

사용자등록

Home : 고객센터 : 사용자등록 : 사용자등록

① 키보드보안은 이용하실 경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후 이용 바랍니다. (※ 설치파일 [다운로드](#))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사용자ID	영문,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 성명	(성명변경)
*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 주소	주소가 없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휴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우편	팩스번호		

공동·금융연동서 등록

공동·금융연동서 등록	Q	삭제
-------------	-------------------	--------------------

② 신청세관은 신한은행 업체번호에 맞춰 자동 선택됩니다.

③ 응급조치서비스에서 민원신청 및 정보제공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동·금융연동서(법인)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자 성명은 세금 유출 위험 예방 및 경영 쟝위 방지 차원에서 등록해야 하는 중요 항목입니다.

⑤ 비밀번호는 8~20자이며 영문(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⑥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수문자는 !, @, #, %, ^, &, *, ~, -, =, _ 중에 1개 이상입니다.

[이전](#)

[다음](#)

■ 작성항목

신청세관등록	• 사업자 주소지의 관할 세관을 선택(통관지 세관 아님)
대표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 :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5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입력 • 성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실명 인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 옆에(실명인증)이라고 표시됨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p>※ 실명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실명확인서비스 네임체크(1600-1522) www.namecheck.co.kr에서 개인 실명정보 등록 및 명의도용차단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차단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차단해제 등록하셔야 실명인증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우편번호를 검색하여 기본주소는 자동입력하고, 상세주소는 직접 입력 • 전자우편 :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받을 업체 실무자의 이메일 입력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로 발급받은 범용, 관세청통관포털용, 인터넷뱅킹용 공동인증서 가능 • 둘보기 모양을 누름 → 인증서 위치 선택 →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서를 선택 → 인증서 암호를 입력 → 확인 버튼을 누름 <p>공동·금융인증서 등록</p>  <p>⑧</p>

(6) 부호 및 서비스 신청

사용자등록

Home > 고객센터 > 사용자등록 > 사용자등록

키보드보안을 이용한 경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후 이용 바랍니다.(OK 설정창)

(9) **제작자등록번호확인** **제작정보** **제작자** **제작자 및 서비스 신청** **45신청**

[업무] 고용부분 등록
본 사업자는 고용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법을 받으신 부후를 먼저 발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전자화정부증명은 전자화정부증명을 받으신 부후(표지면, 사용자번호(또는 전자수신번호) 및 사용자명)와 함께 본 사업자의 부후가 유통됩니다.
단, 전자화정부증명을 받으신 경우에는 기법을 유형으로 인쇄거나 부후 템에 신경(또는 부후을 출력)하여 표시됩니다.

1. 업무별 등록
- 무역증명(증명서) 표기로, 품종증명증명업체의 고유번호가 관리청에 유통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 유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부후 관리 (선택) 표기하는 경우
- 입법유형이 국가별주체인 경우, 국가별주체로 신고, 수출입자처원별로 강제로 해당됩니다.
- 한정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국내수출입)은 전자수신번호로 강제로 해당됩니다.

3. 부후 관리 (부호입력으로 표기하는 경우)
- 본 사업자는 부후를 신고하는 경우 각 부후별 별도로 일자에 따라 발급일로 서야 합니다.
- 발급일이 있는 부후를 신고하는 경우, 전자화정부증명서로 본 사업자에서 조회 및 통보가 가능합니다.

4. 별도의 부호를 필요로 하는 업체의 업체 유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선(온라인)정부
- 관(온라인)정부
- 유통점(온라인)

5. 업체유형:유관기관(기타)은 유관기관 관계자만 등록하시야 합니다.

업체유형 **...선택...**

업체유형	부호명	부호	사용유무	주 사용

① 행정자치 시 기동복 된 부호값은 저장버튼과는 다른 유형입니다.
② 업체유형 변경 시 새 계약인 사업자로도 정확히 기재하시는게 합니다.
③ 만일 다른 부호로는 정보를 조회하는 온도로만 사용됩니다.(신청서 전송 불가능)
주차용부호는 신고하고 작성 시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서비스 종류(증명/승인)일자

신청	서비스	비고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증명		
<input type="checkbox"/> 관리화정		
<input type="checkbox"/> 수출입회계		

서비스 신청 시 의무사항

- 서비스 종류(증명/승인)일자는 제작 및 수출 등 정보로도 추가 시 품목을 위하여 적어 두고 활용됩니다.
- 수출입증명, 관리화정 등 품목 세부로 등록되는 상세항목을 확장하는 구현방향은 관리화정에 맞습니다.
- 수출입증명은 수출입증명을 수출입증명과 관리화정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 유동화정과 관리화정으로 나누어 사용됩니다.
- 선상화정은 신고자와 증명(증명서)을 일치시킵니다.
- 증명(증명서)을 주제로 하는 의무사항 서비스(증명/증명/승인)일자는 제작일자를 기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당장 고유번호가 주제로 되어 있는 많은 문서(증명/증명/승인)일자는 신고 예상 수 없습니다.
- 증명(증명서)을 주제로 하는 의무사항 서비스(증명/증명/승인)일자는 신고 예상 수 없습니다.
- 증명(증명서)을 주제로 하는 의무사항 서비스(증명/증명/승인)일자는 신고 예상 수 없습니다.
- 증명(증명서)을 주제로 하는 의무사항 서비스(증명/증명/승인)일자는 신고 예상 수 없습니다.
- 증명(증명서)을 주제로 하는 의무사항 서비스(증명/증명/승인)일자는 신고 예상 수 없습니다.
- 수출입증명, 관리화정은 신고항목의 비교증명으로는 신고 예상 수 없습니다.
- FITA증명지(비어터)를 주제로 하는 의무사항은 무역증명, 관리화정(증명)으로 선택하고, 세부구성을 수출입증명한 선택합니다.
- 원장판권 서비스로是以 관리화정(증명)으로 선택합니다.
- 단, 단증명서는 단증명으로 선택합니다.

■ 작성항목

업체유형

- 회원가입하는 사업자로 세관에 영업 등록되어 있는 업체 유형을 모두 선택
 - 업체유형을 선택 시 부호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영업 등록한 후 이용신청 가능
단, 수출입신고자(관세사 등) 선택 시 세관시스템에 등록된 신고자부호가 없을 경우에는 '부호 없음'으로 표기됨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유형 : 업체화주직접신고, 무역업체 선택
서비스종류 : (세관승인필요) 수출입통관 / (자동승인)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체크

(7) SMS 신청

(10)

안내구분		안내내용		수신채널	
				SMS	이메일
업무안내	<input type="checkbox"/> 청탁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입사 <input type="checkbox"/> 조사 <input type="checkbox"/> 보세회율(구매) <input type="checkbox"/> 환급 <input type="checkbox"/> 여행자휴대용 <input type="checkbox"/> 이사화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홍보	<input type="checkbox"/> 정책제작 <input type="checkbox"/> 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협약안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수신여부 선택시, 관세청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세행정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등록, 수정 시 마지막 단계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세관에 승인 요청이 됩니다.
 ⓘ 요건신청서 관련 SMS, 이메일은 「Home>통관단말장구>정보관리-SMS/E-Mail수신동의」 화면에서 수신동의여부를 합니다.

완료

unipass.customs.go.kr 내용:

사용자등록정보를(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업무안내서비스, 정책홍보 서비스, 수신채널 : 선택 체크사항으로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체크하면 됨
- '완료'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세관에 승인 요청됨

2 법인 통관고유부호 신청하기

- ▣ 통관고유부호란 :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 등의 관세행정 업무에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 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
- ▣ 통관고유부호 신청하기 : 유니패스 →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① 업무지원

② 통관고유부호 조회

③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조회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Home ·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조회/신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조회

- ▣ 신규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조회 후 하단의 등록 버튼 클릭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정보, 사업자등록증 주소 등의 신청인 기본정보 및 업체정보를 입력

-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위임의 경우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서식을 첨부 후 전송

통권 고용부호조회/신청

Home | 로그인 | 접근고용부 | 통권고용부조회/신청

신청인 기본정보

신청구분	신규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button" value="기본정보"/>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명 ...선택...	대표자명	<input type="button" value="대표자명구분번호"/>
사업자등록증 수신 주소	<input type="text"/>		
대표자전화번호	<input type="text"/>		
설립일자	<input type="text"/>		
	대표자번호 *본지사/부본 ※ 단일법인 ○ 본사 ○ 지사		

*사업자등록증
주소는 조회되지 않을 경우, [크기](#)를 클릭하십시오.

업계정보

사업집단관리체 작성여부	<input type="radio"/> 적용 <input checked="" type="radio"/> 미적용	후대전화번호 이동일	<input type="text"/>
※미숙수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문서사후보 제출일	<input type="text"/>
미숙수로 수신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신청인종 별도입력	<input type="checkbox"/> 첨부		

첨부파일

NO	첨부파일 종류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관리서식 파워포인트 다운로드 (관제서 제19)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담당고용부회원용종류 □ 민원은 건 신청내역의 경락한 김충을 위하여 한세정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보법", 제 38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공용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일정화하는 용도입니다.		<input type="text"/>

목록

전송

- ▣ 통관고유부호 신청현황 조회 : 유니패스 →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신청현황 확인

통관고유부수신현황 [\[?\] Home](#) >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수 - 통관고유부수조회/신청 | 배뉴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 승인현금 받은 통관고유부수는 Home >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수 > 통관고유부수조회/신청 배뉴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input type="button" value="제출일자"/> 2024-09-11 ~ 2024-09-12 <input type="button" value="2일"/> <input type="button" value="1주일"/> <input type="button" value="1개월"/>						
<input type="checkbox"/> 신규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전체 <input type="radio"/> 신규 <input type="radio"/>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차이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전체 <input type="radio"/> 신청 <input type="radio"/> 승인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checkbox"/> 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button" value="Q. 조회"/>						
전체 0 건 페이지당 10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No	신청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조회구분	차이구분
조회조건을 선택하시거나 조회						

PART 02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01

원산지증명서 개요

1 의의 및 발급 방식

-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
 - 기관발급 : 원산지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 세관 및 상공회의소 : 원산지증명서 신청 사이트((세관)유니파스, (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 센터) 및 발급 수수료 상이(세관에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자율발급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 서명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2 원산지증명서 세관발급 절차

- ▣ 기관발급 협정 :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RCEP,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 싱가포르(일부 협정은 자율증명 방식도 함께 규정)
- ▣ 신청절차

- Step 1** 유니파스 접속
- Step 2**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서명권자 서명 등록 | * 전자서명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자는 사전에 수출자 서명이미지를 등록하여야 함
- Step 3** 원산지증명서 신규신청 | * 신청서 전송 후 '전자신고 → 처리현황'에서 심사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Step 4** 세관심사 | * 신청받은 날로부터 3일 내, 현지확인 필요시 10일 내, 공휴일 및 보정 기간 제외)
- Step 5** 세관 승인 | * 심사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접수통보'에서 '결과통보'로 확인
- Step 6** 원산지증명서 발급 | *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단 1회만 출력가능하며 앞 · 뒤 커려 인쇄
- Step 7** 필요시 재발급, 정정발급

02

원산지증명서 기타 신청

1

원산지증명서 정정

- **개요**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 **방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과 추가서류*를 이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한 세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UNI-PASS를 통해 신청하기 : 전자신고 → 처리현황 → 제출번호 클릭 → 상세조회 화면의 하단에서 정정발급

2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개요**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 도난 ·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 **방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이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한 세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 UNI-PASS를 통해 신청하기 : 전자신고 → 처리현황 → 제출번호 클릭 → 상세조회 화면의 하단에서 재발급

3

원산지증명서 취하

- **개요**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 포함)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
- **방법** :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한 세관에 제출

03 한-아세안 FTA

1 원산지증명 개요

- ▣ 발효일 : 2007년 6월 1일~ (국가별 상이)
- ▣ 협정국가 : 10개국(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필리핀)
- ▣ 발급기관 : (한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아세안) 각국 정부 기관
- ▣ 증명서 양식 : 한-아세안 FTA 협정 통일 서식(FORM AK)
- ▣ 발급신청 :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제출 면제 : FOB 기준 미화 200불 이하의 상품 또는 우편물

2 참고 사항

- ▣ 소급발행 :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12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 진정등본 :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수출당사국에 보관중인 수출 서류를 근거로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기재(12번란) 된 증명서 발급 가능
- ▣ 협정관세 사후신청 : 국가별로 사후 적용 가능 여부 및 요건 상이
 *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수입 후 1년 이내 / 필리핀 :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 베트남 : 수입신고로부터 30일이내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 소급기간 없음
-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5년)
- ▣ 원산지검증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3 원산지증명서 견본

견본(FTA원산지증명서)



1.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Reference cod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See Notes Overleaf			
2.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 Vessel's name/Aircraft etc : Port of Discharge :.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price per unit,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null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31/9999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small>*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small>					

1/1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 원산지 증명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로, 총 3부로 구성(원본은 수입자, 제2사본은 수출국 보관,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보관)
- ✓ 한-아세안 FTA 체결국 중 싱가포르는 전자문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 원산지증명서의 뒷면(OVERLEAF)을 출력하지 않을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뒷면(OVERLEAF NOTES) 인쇄
- ✓ 다수 품목인 경우 추가 페이지(Additional Page) 양식 사용 가능
- ✓ 한-아세안 FTA 체결국 중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시행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시 상대국에 e-C/O가 전자적으로 전송됨
- ✓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서식 제13란에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 체크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

04 한-베트남 FTA

1 원산지증명 개요

- ▣ 발효일 : 2015년 12월 20일
- ▣ 협정국가 : 한국, 베트남
- ▣ 발급기관 : (한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베트남) 산업부역부
- ▣ 증명서 양식 : 한-베트남 FTA 협정 지정 양식
- ▣ 발급신청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 유효기간 :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 ▣ 제출 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2 참고 사항

- ▣ 소급발행 :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12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 진정등본 : 분실, 도난 또는 멸실된 경우 수출당사국에 보관중인 수출 서류를 근거로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기재(12번란)된 증명서 발급 가능
- ▣ 협정관세 사후신청 : 수입일 후 1년 이내
-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 ▣ 원산지검증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3 원산지증명서 견본

견본(FTA원산지증명서)									
					Reference No. Reference code.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See Notes Overleaf				
1.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 Vessel's name/Aircraft etc : Port of Discharge ...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5.Item number 6.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12.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null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31/9999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 .									
1/1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 원산지 증명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로, 총 3부로 구성(원본은 수입자, 제2사본은 수출국 보관,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보관)
- ✓ 원산지증명서의 뒷면(OVERLEAF)을 출력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뒷면(OVERLEAF NOTES) 인쇄
- ✓ 다수 품목인 경우 추가 페이지(Additional Page) 양식을 사용
- ✓ 한-베트남 FTA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시행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상대국에 e-C/O가 전자적으로 전송됨
- ✓ 제3국 송장 발행 시, 제13란에 '비당사국 송장'이라고 기재하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같은 정보를 기재

05 한-인도 CEPA

1 원산지증명 개요

- ▣ 발효일 : 2010년 1월 1일
- ▣ 협정국가 : 한국, 인도
- ▣ 발급기관 : (한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섬유위원회
- ▣ 증명서 양식 : 한-인도 CEPA 협정 지정 양식
- ▣ 발급신청 : 수출자, 생산자(수출자,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 유효기간 :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 ▣ 제출 면제 :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금액제한 없음)

2 참고 사항

- ▣ 소급발행 : 의도하지 않은 실수, 누락, 그 밖의 타당한 사유의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를 기재(6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 진정등본 : 도난□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발급기관의 수출서류를 근거로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기재(6번란)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 재발급 요청 시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협정관세 사후신청 : 수입일 후 1년 이내(인도 내 사후적용은 실무적으로 어려움)
-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 ▣ 원산지검증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 ▣ 인도 관세 당국은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서류(Form I)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내 수출자는 Form I에 대한 준비 필요

3 원산지증명서 견본

견본(FTA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Reference Code.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 Vessel's name/Aircraft etc : Port of Discharge :	6. Remark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 style="text-align: center;">THE REPUBLIC OF KOREA</p> <hr/> <p>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p> <hr/> <p>.....null.....</p> <p>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p>	
<p><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name, address, country)</p> <p>12/31/9999</p> <p>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p>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 총 4부로 구성(원본□제3부본은 수입자, 제2부본은 발급기관, 제4부본은 수출자가 보유)
 - ✓ 원산지증명서의 뒷면(OVERLEAF)을 출력하지 않을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기급적 뒷면(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인쇄를 권장
 - ✓ 한-인도 CEPA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시행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상대국에 e-C/O가 전자적으로 전송됨
 - ✓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서식 14란에 제3국 송품장(Tird Country Invoicing) 체크하고 속장을 박행한 회사 또는 운영의의 이를 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기재

06

한-중국 FTA

1

원산지증명 개요

- ▣ 발효일 : 2015년 12월 20일
- ▣ 협정국가 :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 ▣ 발급기관 : (한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중국) 해관총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 ▣ 증명서 양식 : 한-중국 FTA 협정 지정 양식
- ▣ 발급신청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 (선적일 불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제출 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2

참고 사항

- ▣ 소급발행 : 불가항력,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의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5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 진정등본* :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의 경우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dated ” 문구를 기재(5번란)하여 소급 발행 가능
*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정
- ▣ 협정관세 사후신청 : 수입일 후 1년 이내
-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
- ▣ 원산지검증 : 간접검증 후 직접검증

3 원산지증명서 견본

견본(FTA원산지증명서)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Reference Code.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see Overleaf Instructio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SCRIPT ERROR			5. Remarks: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5 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liters, m3,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4. Certification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Importing country)</p> <p>..... null</p> <p>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p>			<p>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 - China FTA.</p> <p></p> <p>12/31/9999</p> <p>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p>								
<small>*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small>											

1/1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만 인쇄되어야 함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제9란) HS 2022에 따른 번호를 기재, (제10란) HS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
- ✓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수량단위코드(Unit Code)를 사용할 것
- ✓ 한-중 FTA는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시행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상대국에 e-C/O가 전자적으로 전송됨
- ✓ 원산지증명서 서식 제5란에 비당사국 운송자의 법적이름과 국가를 기재하고 제12란에는 송장 번호 및 날짜가 기재

07 RCEP

1 원산지증명 개요

- ▣ 발효일 : 2022년 2월 1일(우리나라 기준)
 - * ('22.1.1.)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22.3.18.) 말레이시아, ('23.1.2.) 인도네시아, ('23.6.2.) 필리핀, ('23.12. 기준) 미얀마 미발효
- ▣ 협정국가 :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 발급기관 : 세관 및 상공회의소(우리나라 기관발급의 경우)
 - * 각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홈페이지 (<https://rcepsec.org/rules-of-origin>)에서 확인
- ▣ 증명서 양식 : RCEP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 ▣ 발급신청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제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

2 참고 사항

- ▣ 소급발행 :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의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ACTIVELY” 박스에 체크 표시(17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 진정등본 :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 문구와 진정등본의 재발급 일자를 추가로 기재(14번란)하여 증명서 발급 가능
- ▣ 협정관세 사후신청 :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
 - * 회원국별 수입통관 후 사후적용 규정과 운영여부가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신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긴 기간(5년)
- ▣ 원산지검증 : 직접검증(서면, 방문), 간접검증

3 원산지증명서 견본

견본(FTA원산지증명서)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Reference Code:		Form RCEP			
2. Goods consigned to (Importer's/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Korea (Country)					
3.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untry (if known)		5.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input type="checkbox"/> Given <input type="checkbox"/>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f known) Departure date : Vessel's name/Aircraft flight number etc : Port of Discharge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6. Item number SCRIPT ERROR	7.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	8. Number and kind of package and description of goods //////////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	10. Origin Confering Criterion / / / / /	11.RCEP Country of Origin / / / / /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of content), unit (FOB) where RVC is applied / / / / /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 / / / /
14. Remarks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16.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DEO 319999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7.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put type="checkbox"/> Third-part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ISSUED RETROACTIVELY R.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							

I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원산지 증명서 원본 1부만 인쇄 가능하며 전자본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인도네시아로 한정
- 원산지증명서를 종이본으로 출력 시, 뒷면(OVERLEAF)을 출력하지 않을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뒷면(OVERLEAF NOTES) 인쇄
- 다수 품목인 경우 추가 페이지(Continuation Sheet) 양식 사용 가능
- 연결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제14번란에 원본원산지증명서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국가, 최초 수출당사국의 RCEP 원산지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17번란의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박스에 체크 표시
-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서식 제17란에 제3국 승송장(Tird Country Invoicing) 체크하고, 제14번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기재

08

한-인도네시아 CEPA

1

원산지증명 개요

- ▣ 발효일 : 2023년 1월 1일
- ▣ 협정국가 : 한국, 인도네시아
- ▣ 발급기관 : (한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인니) 통상부
- ▣ 증명서 양식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 지정 양식
- ▣ 발급신청 :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선적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제출 면제 : FOB 기준 미화 200달러

2

참고 사항

- ▣ 소급발행 :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의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4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 진정등본* : 도난 ·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기재(4번란)하고 원본 발급 날짜가 기재(12란)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정
- ▣ 협정관세 사후신청 : 인도네시아는 특혜관세 사후 신청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5년)
- ▣ 원산지검증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3 원산지증명서 견본

Certificate of Origin 견본(FTA원산지증명서)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SCRIPT ERROR KOREA-INDONES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I-CEPA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see Overleaf Notes)		
2. Importer's name and address: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		4. Remarks:		
Item number	6.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number and type of package, and quantity)	7. HS code (4 digit code)	8. Origin criterion	9.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FOB Value only when RVC/QVC criterion is used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Indones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12/31/9999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Indones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				
1/1				

■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의 원본과 2부의 사본, 총 3부로 구성(원본은 수입자, 제2사본은 발급기관, 제3부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유)
- 원산지 증명서 원본 1부만 인쇄 가능하며 전자본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를 종이본으로 출력 시, 뒷면(OVERLEAF)을 출력하지 않음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뒷면(OVERLEAF NOTES) 인쇄
- 다수 품목을 신고할 경우 추가 페이지(Additional Page) 양식을 사용
- 한-인도네시아 CEPA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시행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상대국에 e-C/O가 전자적으로 전송됨
-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제4란에 “NON-PARTY INVOICING” 및 송장을 발급한 회사의 성명(상호)와 국가를 기재하고, 제10란에는 송장 번호 및 날짜가 기재

09

한-캄보디아 FTA

1

원산지증명 개요

- ▣ 발효일 : 2022년 12월 1일
- ▣ 협정국가 : 한국, 캄보디아
- ▣ 발급기관 : (한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캄보디아) 상무부
- ▣ 증명서 양식 : 한-캄보디아 FTA 협정 지정 양식
- ▣ 발급신청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제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수입물품

2

참고 사항

- ▣ 소급발행 :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의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13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 진정등본 :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기재(13번란*)된 증명서 발급 가능
 - * 원산지증명서가 재발급 또는 정정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해당 란에 원본 발급일자가 기재
- ▣ 협정관세 사후신청 :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제도 운영여부 확인 필요)
-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 ▣ 원산지검증 : 간접검증 후 직접검증

3 원산지증명서 견본

		Certificate of Origin 견본(FTA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of Origin No. Reference code.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C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nd addres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5.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Given Under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9.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10.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date of issue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	#####	#####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Cambodia (Importing Count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12/31/9999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31/9999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4.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

1/1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의 원본과 2부의 사본, 총 3부로 구성
- 원산지증명서의 뒷면(OVERLEAF)를 출력하지 않을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뒷면(Overleaf Notes) 인쇄를 권장
-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서식 제14란에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 체크하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을 기재

10

한-이스라엘 FTA

1

원산지증명 개요

- ▣ 발효일 : 2022년 12월 1일
- ▣ 협정국가 : 한국, 이스라엘*
 - * 이스라엘 영역 적용과 관련으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 발급기관 : (한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이스라엘) 재무부 조세당국 관세국
- ▣ 증명서 양식 : 한-이스라엘 FTA 협정 지정 양식
- ▣ 발급신청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
(선적일 불포함) 가능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제출 면제 : 사인 간의 소포 및 여행자 휴대품으로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

2

참고 사항

- ▣ 소급발행 :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의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SPECTIVELY”를 기재(7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 진정등본 :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DUPLICATE” 문구가 기재(7번란)된 증명서 발급 가능
- ▣ 협정관세 사후신청 : 수입 시 관세 당국에 특혜 관세를 신청하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로 이스라엘 법에 따른 기한 내 신청한 경우
-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 ▣ 원산지검증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3 원산지증명서 견본

견본(FTA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KOREA - ISRAEL FTA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Korea	2. Certificate no.			
3. Importer(name, full address, country)	4. Country of Origin KOREA			
5. Port of shipment and Transport Details (Optional)	6. Country of destination ISRAEL			
7. Observations	8. Commercial invoices Unknown			
9. Description of goods				
No.	Tariff item number	Description of the goods	Origin Criterion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	#####	10/0	#####	#####
ORIGIN CERTIFICATION				
10. Declaration by: <input type="checkbox"/> The Producer <input type="checkbox"/>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he has read the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this Certificate, and that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Agreement. Date: DEC 31,9999			11. Certification by the Issuing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and that i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Date: DEC 31,9999 Stamp and signature	

*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만 인쇄되어야 함
- ✓ 다수 품목인 경우 추가 페이지(Additional Page) 양식을 사용
- ✓ 협정에 따른 역외가공이 수행된 물품은 “OUTWARD PROCESSING” 기재(제 7란)
- ✓ 제3국 송장 발생 시, 원산지증명서식 제7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상호 및 국가 기재
-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The Producer”란에 체크 표시,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란에 체크 표시

11**한-싱가포르 FTA****1****원산지증명 개요**

- 발효일 : 2006년 3월 2일
- 협정국가 : 한국, 싱가포르
- 발급기관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입주기업에 한함) (싱가포르)
세관
- 증명서 양식 : 양국 간 각자 증명서식
- 발급신청* : 수출자
 - * 수출자가 원산지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수출자는 아래에 기초하여 C/O를 신청하고 서명할 수 있음 ①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자 또는 ②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가 있는 경우
- 발급시기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제출 면제 : 상품의 총 관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

2**참고 사항**

- 소급발행 :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15번란)하여 소급발행 가능
- 진정등본 :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기재(15번란)된 증명서 발급 가능
- 협정관세 사후신청 : 수입 시 관세 당국에 특혜 관세를 신청하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로 싱가포르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한 내 신청
- 서류보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 원산지검증 : 직접검증

3 원산지증명서 견본

견본(FTA원산지증명서)				
1.Exporter(name, address, country, Tax ID No)		Reference No. Reference Cod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2.Importer(Name, Address, Country)				
3.Departure Date		4.Vessel's Name/Flight No.		
5.Port of Discharge and Route(as far as known) FROM : TO : BY :				
6.Country of Final Destination SINGAPORE		7.Country of Origin KOREA		
8.Item Number	9.Description of Goods	10.HS No. (6digit)	11.Marks & Number	12.Quantity & Unit
/////	//////////	//////////	//////////	0
14.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null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5.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Singapore,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12/31/9999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

1/1

■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사항

-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만 인쇄되어야 함(1회 출력)
-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을 받을 수 있음
-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제5란 또는 별도의 첨부물에 운송경로의 추가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음

12

UNI-PASS 활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1 수출자 서명권자 서명등록

- MY메뉴 → 서비스관리 →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서명 목록 → 신규 → 업체정보 및 서명권자 입력 후 저장

The screenshot shows the UNI-PASS service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전자신고', '전자납부', '업무처리', '정보포털', '고객센터', and '통관신청구조'. A red box highlights the '회원가입' (Registration) link in the top right corner.

The main form is titled 'FTA원산지증명서수출자서명등록' (Registration of FTA Origin Certificate Export Signer). It has tabs for 'ENGLISH' and 'KOREAN'. The 'Company name' field contains '서비스온라인'. The 'Address' field is empty. The 'City' field is empty. The 'Country' field is empty. The 'Tel No.' field is empty. The 'Fax No.' field is empty. The 'Signature' field contains a placeholder '첨부된 파일을 선택하세요.' (Select file to attach.)

Below the form, there are notes about file formats: '※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 : *.jpg, *.gif, *.png, *.bmp, *.jpeg' and '※ 파일 크기 : 100KB 이하' (File size : less than 100KB).

At the bottom, there are checkboxes for 'Use Y/N' (Y: checked, N: empty), a date input field 'Date of enforcement' (2024-10-10), and two buttons: '저장' (Save) and '취소' (Cancel).

- 원산지증명신청서 작성 시 수출자 서명을 조회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FTA → FTA원산지증명신청 → 공통사합(탭) → 수출자신고항목 → 서명이미지 버튼 클릭 → 서명권자 목록 확인

The screenshot shows a list of signing authorities for an export company. The title is '서명권자 목록' (List of Signing Authorities). There is a total of 1 item. The page number is 10.

선택	서명정보	서명이미지
<input type="radio"/>	등록번호: 3058812317001 상호: ELCA KOREA LTD. 서명권자명: CristoferWood 직급: Manager 연락처: 234-2342-3423 등록일자: 2016-02-22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선택' (Select) and '닫기' (Close).

2 원산지증명서 신규 신청

- 원산지증명서 신규 신청하기 : 전자신고 템 → FTA → FTA 원산지증명신청
 - 수출신고서 수리 이후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가능함
 - 복수의 수출신고서를 병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가능하고 이때도 수리된 수출신고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병합된 수출신고서는 동일 선적 건이어야 함(선적항과 목적항, 선적일자 등이 동일)

① 전자신고

② FTA

번호	업체 구분	서식명	서식설명
1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2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3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4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5	FTM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6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7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8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9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10	FTA	FTA_전자신고(FTA)	FTA_전자신고(FTA)

- 신청개요 탭 → 제출번호 채번 → 기본정보 및 신고인정보 입력
- 한-아세안FTA 및 RCEP 협정에만 연결워서지 증명여부를 선택

참고

- ①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신청서 목록을 불러오기 하려면? > 불러오기 버튼 클릭
② 원산지증명신청서 작성시작에 전송 이행 밤금될 원산지증명서를 미리 보기하려면? 미리보기 버튼 클릭

공통사항 탭 →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정보 입력

※ 해외거래처 부호 조회 : 업무지원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Common Information' tab of the FTA system. It includes sections for:

- Exporter(수출자):** Shows fields for company name, address, phone number, fax, and email.
- Producer(생산자):** Shows fields for company name, address, phone number, fax number, and email.
- Importer(수입자):** Shows fields for company name, address, phone number, fax number, and email.

운송정보 및 송품장정보 입력

The screenshot shows the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Delivery Note Information' tabs of the FTA system. It includes sections for:

- 운송정보:** Shows fields for shipping method, consignee, shipping date, and tracking number.
- 송품장정보:** Shows detailed sections for shipping documents, marks and numbers, and package details.
- 수출자신고(Declaration by Exporter):** Shows fields for production location, export date, signature, and declaration text.

- ▣ 행추가 클릭하여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제조공정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 물품내역 → 수출신고 정보불러오기 → 수출신고번호 선택 후 등록 → 각 품목별로
(란별로) 물품정보 입력 → 수정(저장) → 해당 정보 입력 완료 후 전송

* 신청물품 등록 시 수출신고서의 규격정보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C/O 신청에 사용된 규격 수량이 수출신고서의 규격 수량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기 승인된 C/O에 사용된 규격수량을 포함하여 누적된 신청 수량이 수출신고 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고수량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통보 됨)

■ 원산지증명 신청 물품이 다수일 때 신청물품 정보를 엑셀로 등록 가능

- 물품내역 탭의 양식다운로드 파일 선택 → 엑셀파일에 물품 정보 기입 → 파일업로드

▣ [기타] FTA원산지증명 신청 등록 후 추후에 해당 신고서에 대한 원산지소명서 등록 :
(1, 2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하며,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1) 첨부서류 사후제출 : 전자신고 → 첨부서류 사후 제출 → 제출일자 설정, 업무구분
에서 FTA 선택 후 조회 → 해당 제출건에 서류 첨부
 - 2)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승인 후에도 제출 가능)
 -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의 물품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원산지소명서에 대해서는 접수통보서 또는 오류통보서가 수신되고 별도의 결과통보는 없음

전자신고
환산지수명서
Home > 환자신고 > 신고서작성 > FIA > 환산지수명서

환산지수명서

*환자번호	2409			*작성일자	2024-09-24		
*환자등록번호	신약	확인		※ 긴급처동료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응급을 신적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국어판		Q		*신청인		*부당인	

수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생산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용품명세

*제품번호 H1부호(단위)	용량
금액	
*기기증정 FOB ○ DSW	*금액
환산지수명기준	
*주요생산증정	

첨부파일

*약사증명서	*약사증명서
*약사증명서	

증명서

*신약	*제조장
제조장	제조장
제조장	제조장
H1부호	H1부호
용산지	용산지
수령처	수령처
가격	가격
증명서(영문)	

▣ [기타] BOM은 원산지증명 신청 화면에서 첨부문서로 BOM을 제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 신청 후 추후에 해당 신고서에 대한 BOM을 전자적으로 별도 제출 가능(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BOM 제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승인 후에도 제출 가능)
- BOM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의 물품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BOM에 대해서는 접수통보서 또는 오류통보서가 수신되고 별도의 결과통보는 없음

The screenshot shows the UNI-PASS system's 'BOM' submission modul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Home',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and 'BOM'. A red box highlights the 'BOM' tab. Below the tabs, there are sections for '제출자정보' (Submitter Information) and '생산자' (Manufacturer). The 'BOM' table at the bottom lists several entries, each with columns for '선택' (Select), '제작일자' (Manufacturing Date), '제작번호' (Manufacturing Number), '제작국가' (Manufacturing Country), '제작장소' (Manufacturing Location), and '제작업체' (Manufacturing Company). There are also buttons for '추가' (Add), '수정' (Modify), '삭제' (Delete), and '검색' (Search).

3 재발급 / 정정발급 / 보정발급

- ▣ 전자신고 탭 → 처리현황 → 제출일자 범위 선택 후 조회 → 아래쪽에 내역이 조회되면 해당 원산지증명신청 제출번호 클릭 → 아래쪽에 재발급, 정정발급, 보정발급 버튼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FTA Online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Home', 'Log In', 'Help', and 'Logout'. The main menu on the left has sections for 'Charging Status', 'Charging Application', 'Charging Record', 'Charging Log', 'Charging Application Status', 'Charging Log Status', 'Charging Log Status', and 'Charging Log Status'. The central area is titled 'Charging Status' and contains a message about UNE-PASS. Below this is a search form with fields for 'Submission Date' (from 2024-09-11 to 2024-09-12), 'Search Type' (radio buttons for 'Search by Submission Number' and 'Search by Application Number'), and 'Search Keyword'. A large table lists charging applications with columns for No., Submission Number, Service Type, Submission Date, Status, Submission Date, Status, and Submission Date. At the bottom right of the table is a 'Print' button.

- 재발급 : 처리현황에서 결과통보(04승인통보) 건은 재발급, 정정발급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 정정발급 : 결과통보(04승인통보) 건에 대해 정정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발급 신청서를 작성
- 보정발급 : 보완통보 건은 보정발급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고 보정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보정발급 신청서를 작성

4 첨부서류 사후 제출

- ▣ 전자신고 → 첨부서류 사후 제출 → 제출일자 설정, 업무구분에서 FTA 선택 후 조회 → 해당 제출건에 서류 첨부
(원산지증명서 신청 후 소명서, 자재명세서(BOM) 등 첨부서류는 상시 사후제출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FTA Online System interface, similar to the previous one but with a different focus. It features a 'Charging Status' tab and a 'Charging Application Status' tab. The central area displays a table of charging applications with columns for No., Submission Number, Service Type, Submission Date, Status, Submission Date, Status, and Submission Date. A 'Print'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table.

5 원산지증명서 출력

- ▣ 승인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 전자신고 → 처리현황 → 원산지증명 신청 상세조회
→ 인쇄 버튼 클릭

원산지증명서 출력

- ① 출력 전 반드시 출력 프린터의 환경설정을 '걸러 단면인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② 원산지증명서는 앞면과 뒷면(OVERLEAF NOTES)이 양면으로 인쇄되어야 하며, 앞면은 원본과 사본에 각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예시) 앞면 출력 후 다시 클릭 시 원본(Original)의 앞면이 2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Original) 앞면 1부, 사본(Triplicate) 앞면 1부씩 출력
- ③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출력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1. 「미리보기」로 출력하자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앞면이 총 몇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뒷면출력」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뒷면(OVERLEAF NOTES)을 여유 있게 여러장 출력합니다.
 - 1) 앞면 인쇄 최소 필요 장수 : 테스트용 → 앞면 페이지수 × 2 (한-인도는 × 3)
 - 2) 합정별로 뒷면(OVERLEAF NOTES) 내용은 상이하여, 뒷면 출력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3. 원본(OVERLEAF NOTES) 출력물을 앞면이 인쇄되도록 프린터의 용지함에 넣으십시오. 「테스트출력」으로 앞-뒷면이 모두 한 장으로 정상 출력 되는지 확인하신 후 「앞면출력」 버튼으로 원산지증명서의 Original, Triplicate, Quadruplicate(한인도)을 차례로 출력합니다.
- 1) 「앞면출력」 버튼 1번씩 클릭 시 Original, 2번째 클릭 시 Triplicate, 3번째 클릭 시 Quadruplicate(한인도)가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 2) 편정별 출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베트남, RCEP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 Original, Triplicate
 - 한-인도 : Original, Triplicate, Quadruplicate
 - 한-페루 : Original
 - 한-이스라엘 : 표시 없음
- 3) Duplicate는 세관보관용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 ▣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과 동일(1회 출력 원칙)하게 적용

원산지증명서 번호 : 81588-22-000005K		전송구분 회조
기본정보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flex-grow: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급기관 국가기관 <input type="checkbox"/> 시청(세관) 관세국 </div> <div style="font-size: small;">신청일자 2022-07-05 신청차수 0</div> </div> <p>원산지증명서 출력</p> <p>② 전자본 발급시 PDF 저장 버튼 클릭</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small>① 미리보기」로 출력하자 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앞면(Overleaf Notes)을 제외하고는 양면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앞면과 뒷면(OVERLEAF NOTES)이 양면으로 인쇄되어야 하며, 앞면은 원본과 사본에 각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예시) 앞면 출력 후 다시 클릭 시 원본(Original)의 앞면이 2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Original) 앞면 1부, 사본(Triplicate) 앞면 1부씩 출력</small> </div>		
결과정보 <p>1. 「미리보기」로 출력하자 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앞면(Overleaf Notes)을 제외하고는 양면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2. 「뒷면출력」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뒷면(OVERLEAF NOTES)을 여유 있게 여러장 출력합니다. 3. 원본(OVERLEAF NOTES) 출력물의 앞면이 인쇄되도록 프린터의 용지함에 넣으십시오. 「테스트출력」으로 앞-뒷면이 모두 한 장으로 정상 출력 되는지 확인하신 후 「앞면출력」 버튼으로 원산지증명서의 Original, Triplicate, Quadruplicate(한인도)를 차례로 출력합니다. 4. 「앞면 출력은 원본으로만 가능합니다.」는 표시되는 경우 「앞면 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앞면 출력은 원본으로만 가능합니다.」는 표시되는 경우 「앞면 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6. 「앞면 출력은 원본으로만 가능합니다.」는 표시되는 경우 「앞면 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p>		
발급정보 <p>① 인쇄 버튼 클릭 시 출력 화면 팝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small>① 인쇄 버튼 클릭 시 출력 화면 팝업</small> </div>		
담당자정보 <p>FTA 활용지원 및 해외관련으로 발생 사항은 본부세관과 수출입기자재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p>		
<input type="button" value="인쇄"/> <input type="button" value="재발급"/> <input type="button" value="정상발급"/>		

- 발급협정 : RCEP(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한정), 한-인도네시아 CEPA, 한-싱가포르, 한-아세안(싱가포르)



UNI-PASS

PART 03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01

원산지 인증수출자 개요

1 의의 및 신청 방법

□ 인증수출자 제도의 의의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한-EU,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

- 사용자 등록(사용자등록 안내 Page 참고) 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한 신청

2 인증수출자 유형

구분	업체별	품목별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대상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 운영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 운영

□ 인증수출자의 유형 선택 방법

- 많은 품목 &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 → '업체별' 인증 선택
- 적은 품목 & 특정 국가에 수출 → '품목별' 인증 선택

3 혜택 및 유의사항

▣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구분	인증 前	인증 后
한-EU 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전산으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RCEP* 한-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1천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 방식 활용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4 인증수출자 FTA 활용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후 발급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 없이 혜택 가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업체의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원산지증빙 서류보관 의무 및 검증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 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02

UNI-PASS 인증수출자 신청

1 신규(품목별)인증수출자 신청하기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 <https://unipass.customs.go.kr>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순서로 클릭

(2) 인증수출자 서식 다운로드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incheon>) → 정보공개 → 인증수출자 → 인증연장 안내 → 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다운로드

(3) 메뉴 검색에서 ‘품목별 인증 수출자 신규/연장 신청서’ 검색 후 선택 클릭 → 신청화면

번호	접두구분	서식명	서식파일
1	FTA	FTA_신증수출자_원산지증명서	다운로드
2	FTA	FTA_필자인증신청서	다운로드
3	FTA	FTA_필자인증신청서	다운로드
4	FTA	FTA_필자인증서	다운로드
5	ECM	FTA_필자인증서	다운로드
6	FTA	FTA_필자인증신청서_한글	다운로드
7	FTA	FTA_필자인증신청서_한글	다운로드
8	FTA	FTA_필자인증신청서_한글	다운로드
9	FTA	FTA_필자인증신청서_한글	다운로드
10	FTA	FTA_필자인증신청서_한글	다운로드

(4)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 신청 정보 입력

- 신청번호 선택 후 채번을 클릭하면 신청번호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 신청세관 : 화면을 참조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세관에 신청
 - 신청세관은 기존에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승인을 받은 세관으로 신청
 - 신청세관 관할지 확인하기 | FTA포털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

■ 인증대상 신청물품

- 신청인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을 말하며 HS6단위 기준으로 신청
 - 품명은 자동입력 되기 때문에 신청품명으로 직접 입력하여 바꿔야 함
 - 행주가를 클릭하면 아래에 칸이 생겨요!
 - 원산지결정 기준을 '코드유효값없'에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

직접입력 가능

■ 원산지 관리전담자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내역						+ 행추가	- 행삭제
<input type="checkbox"/>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선택된 파일 업로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 선택 -"/>

첨부파일
전체 3 건

제출구비서류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소스서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업로드
<input type="checkbox"/>	소요부를 양재서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업로드
<input type="checkbox"/>	제조일정표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업로드

* 첨부파일은 최대 10개, 용량 총합은 40MB로 제한합니다.
※ 대충영문 경우 신고서 전송 후 메뉴 : 전자신고 > 부서별서류선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자동여객점장의 이름을 원산지증명서에 입력해 주면 관세청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외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신청물을 실명으로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button" value="복제"/>	<input type="button" value="임시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일괄전송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전송"/>
-----------------------------------	-------------------------------------	---------------------------------------	-----------------------------------	-----------------------------------

- 행추가를 하여 원산지관리 전담자 정보를 입력
-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확인 : 관세청 FTA포털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참고 [별표3]
-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지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

■ 첨부파일 업로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내역						+ 행추가	- 행삭제
<input type="checkbox"/>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선택된 파일 업로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 선택 -"/>

첨부파일
전체 3 건

제출구비서류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소스서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업로드
<input type="checkbox"/>	소요부를 양재서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업로드
<input type="checkbox"/>	제조일정표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업로드

* 첨부파일은 최대 10개, 용량 총합은 40MB로 제한합니다.
※ 대충영문 경우 신고서 전송 후 메뉴 : 전자신고 > 첨부서류선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자동여객점장의 이름을 원산지증명서에 입력해 주면 관세청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외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신청물을 실명으로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button" value="복제"/>	<input type="button" value="임시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일괄전송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전송"/>
-----------------------------------	-------------------------------------	---------------------------------------	-----------------------------------	-----------------------------------

(5) 작성한 서식의 첨부파일 업로드

- 행 추가하여 앞서 작성한 서류를 항목에 맞게 업로드

(6) 내역 작성 후 전송 클릭

- 전송하면 인증신청이 완료되며, 완료 후 보정요구가 없다면 30일 내로 인증서 완료!

No	접수구분	서식명	제출번호	제출일자	처리상태	접수일자	서류제출여부	첨부파일

(7) 첨부서류 사후제출(제출한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시), 첨부파일 10개 초과시에도 업로드 가능 : '첨부서류 사후제출' 메뉴에서 파일 추가 → 파일추가 클릭하여 보완한 첨부파일 저장

참 고

기존 인증내역 조회

- 인증번호는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인증수출자 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와 인증수출자 연장차수까지 포함한 14자리 숫자를 입력
: 조회 시 인증수출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No	접수명	사업자번호	인증수출자	신장번호	인증유통기간	인증수출자인증번호	인증수출자연장차수

03

UNI-PASS 인증수출자 연장·변경·재발급

1 인증수출자 연장 신청

▣ 신청시기 : 인증 유효기간(5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예시) 만료일 : 2024. 09. 30 → 신청기한 : 2024. 08. 30. 까지

- 인증수출자 통합갱신제 –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각각의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인증 만료일을 통일되도록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
-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품목기준으로 통일

▣ 신청방법 :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업체별(품목별)인증수출자 신규/연장 신청서 클릭 → 필수 기재 사항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전송

▣ 인증수출자 연장신청 서류

구분	업체별	품목별
① 인증(연장)신청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② 원산지소명서, 소명서 입증서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③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 생산자인 경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④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증빙서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⑥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서명카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⑦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⑧ 원산지시스템설명서 또는 업무매뉴얼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 인증수출자 서식 다운로드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incheon>) → 정보공개 → 인증 수출자 → 인증연장 안내 → 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다운로드

Q 인증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A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규로 신청

2 인증수출자 변경신청

- ▣ 인증수출자는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단, 인증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함

The screenshot shows the 'Change Application' form for a certification holder. It includes sections for company information, contact details, and representative information. A red box highlights the 'Change Reason' section where the reason for change is selected as 'Business Change'.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New Representative' section where the new representative's information is entered.

Q 변경신고 / 신규인증? (동일성과 연속성의 차이)

A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시킨 경우에는 동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새로 인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3 인증수출자 재발급 신청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가능
- ▣ 유니패스 로그인 후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인증수출자 내역조회 클릭 후 인증번호 확인 → 재발급 신청

인증수출자 재발급신청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인증수출자재발급신청

*신청번호 <input type="text" value="21"/> 재번	*신청일자 2021-01-29
*신청인명 <input type="text"/>	*신경세관 서울세관[010]
*인증번호 <small>※ 인증번호는 인증자수출증 포함하여 14자리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인증번호(자수포함)는 정보조회>자사실적>기타>인증수출자 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small>	
신청인	
상호 <input type="text"/>	상호(영문) <input type="text"/>
법인유무 <input checked="" type="radio"/> 법인단위 <input type="radio"/> 사업장단위	사업자번호 <input type="text"/>
대표자 성명 <input type="text"/>	대표자 성명(영문) <input type="text"/>
이메일주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건물관리번호 <input type="text"/>
주소(영문)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재발급사유 <input type="text"/>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2항,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목록**임시저장** **일괄전송저장** **삭제** **전송**

04

UNI-PASS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1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개요

- ▣ 의의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해당하는 기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 ▣ 신청방법 :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클릭 → 필수 기재 사항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전송
- ▣ 시기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 1회차 :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2회차 :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 관할지 세관에서 해당 업체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공문 발송
- ▣ 혜택 : 자율점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 시 인증수출자 관련 혜택 제공
 - 두 번의 자율점검을 모두 이행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인증 연장 심사 시 간소화된 서류로 인증수출자 연장 적용

자율점검 이행시 인증 연장 신청 서류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2.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
3. 원산지 관리 전담자 보유 증빙서류
4. 위임장(필요시)

2

UNI-PASS를 이용한 자율점검 작성

- ① 자율점검표 및 결과통보서 작성클릭
 - ② 신청번호(채번 클릭),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고인번호, 신청인명, 신청세관 작성
 - ③ 자율점검표와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메뉴 작성 후 일치여부 확인
 - ④ 자율점검 해당 차수의 인증품목을 기준으로 작성 후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메뉴의 전송 버튼으로 세관 제출

PART 04

FTA 지원제도 활용하기

01

찾아가는 상담센터

1 제도 소개

- ▣ 개요 : 급변하는 대·내외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반의 종합 컨설팅을 지원
- ▣ 지원 방식 : 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가 기업을 방문(또는 온라인 상담)하여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환급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실시
*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전문 상담을 무료로 수행하는 공익관세사를 운영하고 있음

2 신청 방법

- ▣ FTA 포털 → FTA 기업지원 → 찾아가는 상담센터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상담 신청
* FTA 포털 사이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 QR 코드
인천본부세관	032-452-3644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2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26	ptfta@korea.kr	

02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

1 제도 소개

- **개요** :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
- **해외통관애로 유형**
 - ① 이유 없는 통관지연 및 과도한 서류요구
 - ② 국제기준에 어긋난 품목분류
 - ③ 부당한 조사 · 과세 처분
 - ④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특혜관세 적용 거부
 - ⑤ 해외 관세 당국의 인허가
 - ⑥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

2 신청 방법

-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 → 접수 바로가기 → 실명인증 → 접수
 - *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 QR 코드
인천본부세관	032-452-363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78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26	ptfta@korea.kr	

03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1 제도 소개

- ▣ 개요 :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
- ▣ 지원 방식 :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선정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
 -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컨설턴트에게 비용*을 지급
 - *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2 신청 방법 및 절차

- ▣ FTA 포털 → FTA 기업지원 → 컨설팅사업 → 해당 연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 FTA 포털 사이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 (사업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상·하반기*) → 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 컨설팅 수행 및 완료보고 → 컨설팅 평가 → 사업 사후관리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사업 세관별 확인
-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 QR 코드
인천본부세관	032-452-363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78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26	ptfta@korea.kr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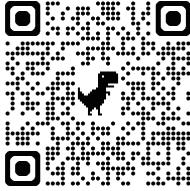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1 제도 소개

- **개요**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 **효력** : 수출입신고 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

2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①인터넷*⁽²⁾우편 또는 ③방문으로 신청
 -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cvnci/main.do>
 - * 인터넷접수(유니패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 물품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 신청품목당 3만원
- **사전심사 신청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전화번호	팩스	신청서 다운로드 QR 코드
042-714-7535	042-936-3528	

05 YES FTA 전문교육

1 교육 소개

▣ 개요 : 수출기업이 FTA 활용 역량과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FTA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무상 교육

▣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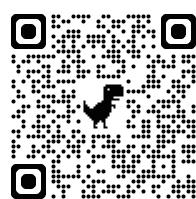
- ① 실무자 대상 기본 교육
- ② 심화 교육
- ③ 사후관리, 원산지조사 등 검증 교육
- ④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교육

* 상세교육과정과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정점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2 접속 방법

▣ YES FTA 전문교육 홈페이지 : <https://www.ftaedu.or.kr>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YES FTA 고객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QR 코드
1544-5702	

06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1 시스템 소개

▣ 개요 :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 무료로 배포하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 기업은 간편발급형, 기본형, 재고관리형 유형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 ·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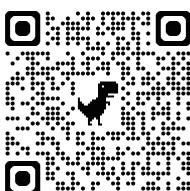
▣ 주요 기능

- ① 협정별 원산지판정 · 관리 지원
- ② 신규협정 및 개정사항 신속 반영
- ③ 기업 ERP와 FTA-PASS자료 연계를 위한 범용 ERP 연계모듈 보급
- ④ 원산지 증빙 문서 유통 및 증빙자료 보관 기능

2 FTA-PASS 사용 방법

▣ FTA-PASS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사전교육 → 기준 · 거래 정보입력 → 원산지 판정 및 증빙서류 발급 → 사후관리
 * FTA-PASS 홈페이지 : <https://www.ftapass.or.kr>

▣ 활용 상담 문의

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QR 코드
1544-0645	fta-pass@origin.or.kr	

07**관세법령정보포털****1 홈페이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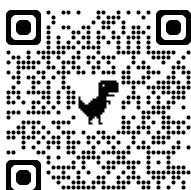
□ 개요 : 관세관련 법령 · 판례, 관세 정보, HS, 관세평가 등의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운영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 주요 내용

- ① 법령 · 판례 : 관세, 무역, 외국환, 세관장 확인, 통합공고, 내국세, 행정관련 법령과 행정칙, 판례 · 결정례, 조약 · 협정, 질의 회신 등의 정보 제공
- ② 관세정보 : 수입, 수출, 환급, FTA, AEO, 특송물품과 납세/환급정보, 통관정보 등 관세행정 관한 프로세스와 관련 법령 등의 정보 제공
- ③ 세계HS : 속건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국내외 사례 등 HS에 관한 정보 제공
- ④ 관세평가 : 관세평가와 관련된 규정, WCO자료, 국내사례 등의 정보 제공

2 접속 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QR 코드
12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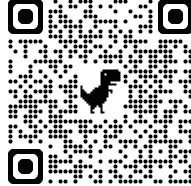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e-C/O)

1 시스템 소개

- 개요 :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 당국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EODES 체결 국가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 기대효과
 - ① 원산지증명서 이용절차 간소화 : 전달, 수취, 수입국 세관 제출 절차 생략
 - ②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 ③ C/O 진위 여부와 관련된 해외통관애로 감소
- 사용 방법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EODES 시스템을 통해서 원산지 정보가 전송, 상대국 수입국은 원산지정보를 조회하여 FTA 특혜를 적용

2 e-C/O 진행 정보 확인

- 관세청 FTA 포털접속 → CO-PASS → CO-PASS 진행정보 → 필수 조회값 입력 → 전송 결과 및 응답결과 확인
 - * FTA 포털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e-C/O 진행정보 확인 QR 코드
인천본부세관	032-452-363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78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26	ptfta@korea.kr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

2024년 10월 31일 발행

발 행 처 인천본부세관

편 집 인 김태연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최지형 권영준 박인덕 강유라 최재민 김선희
박경민 김현정 이수영 박기배 흥지형 차지현
조은진 이소영 이지연

인 쇄 봄을고하다
TEL. 063-224-5640
FAX. 063-225-5640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본부세관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